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 (2019. 9. 2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: 19-133
- 나. 제안자: 이흥민 의원 외 7명
- 다. 제안일자: 2019년 9월 19일(화)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9월 19일(화)

2. 제안사유

- 최근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고 미래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도화하여 마포구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(안 제3조)
- 다. 의료관광 위원회의 설치, 기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9조)
- 라.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(안 제10조)
- 마. 협력기관의 지정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

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입법예고: 2019. 9. 11. ~ 2019. 9. 16.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○ 동 조례안은

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관광진흥법」 제12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등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관한 조문이 시행되고 있는 바,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관광 사업의 육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의료관광 사업의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민·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임.

○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

- 안 제1조에서 마포구 의료관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3조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여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과 민·관 협력체계의 구축,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, 이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으며,

-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운영을 명시하여 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,

동 조례안의 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(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) 및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

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(위원회의 설치요건)를 살펴보면 대 ‘의료분야’ 라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특수성이 인정되어 동 조례안의 위원회 설치요건에 부합하다고 사료됨.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79조(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
2.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
3.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“자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 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-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또한, 제10조에서는 의료관광 홍보 마케팅, 민·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을 명시하여 사업의 특성상 민간자원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음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21세기에 인구 노령화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질 좋은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지정하였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상품을 관광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부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- 또한, 동 조례안이 추구하고 있는 의료관광은 의료 서비스와 관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써 음식, 숙박, 관광, 레저, 문화사업 등 여러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일반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규모도 상대적으로 커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.
따라서, 동 조례안은 마포구의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마포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.
- 다만, 이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주무부서인 관광과와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관내 의료기관, 여행업 등 민간시설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며, 마포구 내 양질의 의료기관 유치 등 의료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임.
또한,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에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붙임: 1. 관련 법령
2. 참고 자료

【관련 법령 1】

「국민건강보험법」

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(이하 "국내체류 외국인등"이라 한다)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,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[제6조 제2항](#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[제5조](#)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. <개정 2016. 3. 22.>

1. 「주민등록법」 [제6조 제1항 제3호](#)에 따라 등록한 사람
2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[제6조](#)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
3. 「출입국관리법」 [제31조](#)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

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[제5조](#)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. <신설 2016. 3. 22., 2019. 1. 15.>

1. [보건복지부령](#)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[보건복지부령](#)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- 가.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- 나. 「출입국관리법」 [제31조](#)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[보건복지부령](#)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

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[제5조](#)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. <신설 2016. 3. 22.>

1.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[제5조 제2항](#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2. [제5조 제3항](#)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. <신설 2016. 3. 22., 2019. 1. 15.>

1.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2.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,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[제41조](#)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[보건복지부령](#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[제5조부터 제11조](#)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[대통령령](#)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3. 22.>

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[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](#)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[제69조 제2항](#)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. <신설 2016. 3. 22.>

⑧ 국내체류 외국인등(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[제78조 제1항](#)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3. 22., 2019. 1. 15.>

1.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
2.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

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[제69조부터 제86조](#)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[고시할 수 있다](#). <신설 2016. 3. 22.>

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(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)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[제53조 제3항](#)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[제53조 제3항](#)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·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【관련 법령 2】

「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)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. 다만,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.
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

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
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

3.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

【관련 법령 3】

「관광진흥법」

제12조의2(의료관광 활성화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(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, 치료,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·지원 관련 기관에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9. 3. 25.]

【참고 자료】

○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서울시 및 우리구 병·의원 현황

서울시	우리 구						비고
	계	피부과	성형외과	치과	한의원	가정의학과	
1,224개	16개 (1.3%)	5개	4개	3개	3개	1개	명단:별첨

(출처 :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)

※ 우리구 병·의원 현황: **730개**(병원 2, 의원 368, 치과병원 3, 치과의원 201, 한의원 155, 한방 1)

※ 외국인 환자 유치업 : 서울시 전체 1,064개 중 우리구는 77개로 7.2% 차지

○ 2017년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

유치실적	국가별	진료과목	비고
32만명	중국,미국,일본,러시아 몽골 순	내과통합, 성형외과, 피부과, 검진센터, 정형외과 순	전년 대비 1.7% 유치실적 감소
※ 의료기관 유형별 :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 , 병원, 치과 병·의원, 한방 병·의원			
※ 지역별 현황 : 서울(62.9%), 경기(12.4%), 대구(6.8%), 인천(4.5%) 순			

(출처 : 2017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통계 보고서, 한국보건산업진흥원)

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자치구 현황

자치구명	의료기관 (종합병원이상 수)	유치업자	의료기관(종합병원 이상)
강남구	685(4)	278	삼성서울병원(상급) / 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(상급)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/ 재단법인베스티안 서울병원
강서구	37(4)	49	서울부민병원 / 의료법인우리들의료재단 우리들병원 의)성삼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/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
광진구	8(2)	12	건국대학교병원(상급) / 혜민병원
중구	70(3)	89	인제대학교부속서울백병원 / 제일병원 / 국립중앙의료원
서초구	157(1)	101	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(상급)
송파구	37(1)	37	서울아산병원(상급)
영등포구	34(7)	73	씨엠병원/ 대림성모병원 / 강남성심병원 /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/ 명지성모병원 / 성애병원 /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
마포구	16(0)	77	없음